# 2019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최지웅	870302-*****		

###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	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결글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82,950	7,050	0	0	
02월	82,950	7,050	0	0	
03월	82,950	7,050	0	0	
04월	108,050	9,190	0	0	
05월	108,050	9,190	0	0	
06월	108,050	9,190	0	0	
07월	108,050	9,190	0	0	
08월	108,050	9,190	0	0	
09월	108,050	9,190	0	0	
10월	108,050	9,190	0	0	
11월	108,050	9,190	0	0	
12월	108,050	9,190	0	0	
연말정산	169,750	12,530			
합계	1,391,050	116,390	0	0	
총합계				1,507,44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1-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최지웅	870302-*****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115,560	0			
02월	115,560	0			
03월	115,560	0			
04월	115,560	0			
05월	115,560	0			
06월	115,560	0			
07월	147,690	0			
08월	147,690	0			
09월	147,690	0			
10월	147,690	0			
11월	147,690	0			
12월	147,69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험	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리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합계	1,579,500	0			
	총합계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최지웅	870302-****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반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수익자)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무)롯데힐링케어 긴	건강보험TM(1			
보장성	104-81-30	)***	205D201300	07429	870302-*****	최지웅	477,000
	동양생명보험	(주)	· (무)수호천사 실속하나로암보험				
보장성	202-81-38	3***	1097449	69	870302-*****	최지웅	422,400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다이렉트100세건	강보험1008			
보장성	201-81-45	5***	851101365	5009	870302-*****	최지웅	226,440
	현대해상화재보	.험 (주)	무배당계속받는암보험 (Hi1603)1?				
보장성	102-81-32	2***	L01610456018		870302-*****	최지웅	298,44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최지웅	870302-*****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유 사업자번호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삼성화재해상보	험(주)	애니카다이렉트	트_개인용			
보장성	202-81-45	5***	119T1578810000		870302-*****	최지웅	735,880
	인별합계금액						2,160,16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4-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유진	870925-*****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반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수익자)	종피보험자2	(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메리츠화재해상보	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운전자.	보험 M-Drive			
보장성	116-81-03	3***	6143749	756	870925-*****	이유진	30,000
	케이디비생명보험 Life Insurance Co	(주) (KDB ).,Ltd)	(무)KDB건강보험1형(기본형)				
보장성	408-81-07	7***	795385103	7953851030004		이유진	420,700
	케이디비생명보험 Life Insurance Co	(주) (KDB ).,Ltd)	(무)KDB내맘대로건 암	(무)KDB내맘대로건강보험 1종 암			
보장성	408-81-07***		616391011	.0014	870925-*****	이유진	42,380
	한화생명보험	(주)	(무)ULCI통합종신				
보장성	116-81-12	1***	146389782		870925-*****	이유진	249,78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유진	870925-*****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수익자)	종피보험자2(	(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Hi1				
보장성	102-81-32	2***	L01731535	5020	180530-*****	최은우	988,870
	870925-*****	이유진					
	현대해상화재보	.험 (주)	무배당퍼펙트골9 (Hi170	무배당퍼펙트골드종합보험 (Hi170			
보장성	102-81-32	2***	L01714331	1663	870925-*****	이유진	1,440,000
	신한생명보험 ( 주 )		신한유니버설Plus	신한유니버설Plus종신보험Ⅱ			
보장성	104-81-28	3***	00109440250		870925-*****	이유진	638,550
	인별합계금액		3,8			3,810,28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최지웅	870302-*****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0-96-04***	<b>さ****</b>	일반	17,300
**4-28-24***	0 ***	일반	5,750
**1-91-30***	김*****	일반	69,000
**1-91-70***	홍***	일반	60,400
**1-22-18***	바****	일반	18,000
**5-24-72***	편****	일반	3,700
**7-48-27***	뉴***	일반	12,900
**5-25-69***	참***	일반	2,600
**5-96-90***	김***	일반	6,400
**5-18-00***	뉴****	일반	14,480
**5-36-19***	온*****	일반	4,000
**1-15-69***	플***	일반	11,900
**3-92-00***	<u>*</u> *****	일반	113,300
**2-92-00***	단***	일반	16,2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7-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최지웅	870302-*****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355,93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355,93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8-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유진	870925-*****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5-18-79***	El****	일반	5,500
**5-26-62***	□ ****	일반	4,700
**5-19-12***	행***	일반	5,800
**5-90-87***	조*****	일반	8,300
**5-96-08***	강****	일반	45,300
**7-48-27***	뉴***	일반	4,400
**6-90-82***	벽****	일반	20,700
**6-02-00***	<b>□</b>  ****	일반	54,600
**1-21-00***	대***	일반	2,5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51,8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51,8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9-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최은우	180530-*****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5-19-12***	행***	일반	121,900
**5-27-41***	□ ******	일반	1,309,680
**5-22-82***	금***	일반	12,080
**5-92-39***	□ ******	일반	15,000
**5-92-47***	진****	일반	7,500
**5-26-81***	정***	일반	5,200
**4-82-00***	( *******	일반	189,750
**0-54-00***	일***	일반	26,520
**1-26-00***	수***	일반	4,800
**7-99-00***	□ *****	일반	9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693,33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693,33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0-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최지웅	870302-*****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33,629,958	485,170	426,470	315,000	34,856,598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4-86-39***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29,323,118
신용카드	104-86-39***	농협은행 주식회사	전통시장	392,170
신용카드	104-86-39***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중교통	356,010
신용카드	104-86-39***	농협은행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315,000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4,306,840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93,000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70,460
인별합	계금액			34,856,598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신제 사용하시 사용내연과 가스하자로가 다른 경우 사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사용카드 등 사용구액 함이서'를 제반구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유진	870925-*****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475,873	190,000	51,410	0	2,717,283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1,535,025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15,380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379,670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190,000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33,600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561,178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2,430
인별합계금액				2,717,283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최지웅	870302-*****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097,090	5,200	0	0	1,102,29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4-86-39***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6,850
직불카드 등	375-88-00***	한국카카오은행(주)	일반	247,200
직불카드 등	101-86-61***	( 주 ) KB국민카드	일반	838,040
직불카드 등	101-86-61***	( 주 ) KB국민카드	전통시장	5,200
직불카드 등	201-81-68***	(주)국민은행	일반	5,000
인별합계금액				1,102,29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00121-2275666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3-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유진	870925-*****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676,960	37,500	0	0	714,460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4-86-39***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431,970
직불카드 등	104-86-39***	농협은행 주식회사	전통시장	37,500
직불카드 등	109-82-04***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	244,990
인별힙	계금액			714,46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최지웅	870302-*****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5,742,105	104,000	0	5,850	5,851,955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	대상금액		
78	74 53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1,194,610	1,078,170	305,960	618,90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391,558	196,810	249,317	654,580	5,742,105
		392,960	383,980	73,380	201,880	
		75,000	0	29,000	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0	0	0	0	104,000
		0	0	0	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0	5,850	0	0		
	0	0	0	0	5,850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유진	870925-*****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21,972	0	0	0	221,972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고테디사그애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0	0		
		26,900	37,312	0	52,950	221,972	
		88,970	15,84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최지웅	870302-*****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예정 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 주 ) 국민은행 (201-81-68***)	해당없음 (내집마련디딤돌대 - 출)	2016-09-05 2046-09-05	30년	2016-09-05	2016-09-05	2,473,799	2,473,799
		115,000,000	115,000,00 0	115,000,000	2,836,453		

- 1. 공제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은 3억원 이하, 2014.1.1.~2018.12.31. 4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
- 2.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